

은평구 조례 정비를 위한 실태조사

2023. 10.

제 출 문

은평구의회 귀하

이 보고서를 「은평구 조례 정비를 위한 실태조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 10.

서경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 수 한 기 영

[의원연구단체]

■ 단 체 명 : 은평구 자치법규 연구회

■ 대표의원 : 오영열

■ 소속의원 : 이동식 양기열 김윤희 김승엽

[연 구 진]

■ 연구기관 : 서경대학교

■ 책임연구원 : 한기영 (서경대학교, 교수)

■ 연 구 원 : 김보람 (서경대학교, 교수)

차홍석 (서경대학교, 연구교수)

안효종 (서경대학교, 연구교수)

목 차

I .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II . 은평구 조례 분석	4
1. 의회사무국	4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4
(2)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8
(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12
(4)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21
2. 감사첨령담당관	23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23
(6)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7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8
3. 행정안전국	30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명위원회 조례	30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33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35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38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무발명 보상 조례	42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 조례	44
(14) 서울특별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6
4. 교육문화국	49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 조례	49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51
(17)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54
(18)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진흥 조례	56
(19)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58
(20)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60

5. 주민복지국	62
(21) 서울특별시 은평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62
(2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65
(23)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66
(24)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	67
6. 재정경제국	68
(25)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68
(26)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	70
(27)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74
(28)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77
(29) 서울특별시 은평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80
7. 교통환경국	82
(30)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82
(31)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 기본 조례	85
(3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88
(33)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95
(34)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97
8. 도시안전건설국	102
(35)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102
(36)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104
(3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7
(38)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수 관리 조례	109
9. 보건소	111
(39)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11
(40)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114
(41)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116

Ⅲ. 은평구에 없는 조례 및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	121
1. 필수조례	121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21
2. 위임조례	126
(2)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대비에 관한 조례	126
3. 추천조례	134
(3) 민원 버스 운영 조례	134
(4)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137
(5) 공공 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139
(6) 측정장비 대여 조례	142
(7)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145
(8)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147
(9) 디지털 미래 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	150
(10) 부모 교육 지원 조례	154
(11)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조례	158
 Ⅳ. 결론 및 요약	 159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조례는 지방자치의 핵심이다. 사실 분권과 지방자치는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중앙집권화가 이른바 ‘근대화’를 불러왔다는 통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는 완전히 상반된 사고방식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국가사무를 중앙집권적 정부와 의회에서 일원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왜 그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려고 하는가?

첫 번째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은 중앙집권화된 권력의 위험성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의 신생 국가들은 근대적 의미의 대통령제를 시행한 미국을 모범으로 하여 대통령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애초에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서, 서로 다른 정체성을 지닌 집단이 하나된 연방을 이룬 형태이며, 대통령은 그 연방의 사무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연방의 대표자인 대통령은 각 주(지역)의 행정권에는 일일이 관여하지 못한다. 그러나 신생 국가에서는 미국이 가지는 연방제라는 특성을 배제한 채로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강력한 집행력을 가지는 행정권을 대통령이 독점하여 독재로 회귀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바로 분권을 통해 이러한 권력의 집중을 막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현대에 이르러 지방자치와 분권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획일적인 입법 및 행정을 타파하기 위함이다. 철학적이면서 동시에 본질적인 관점을 끌어와서 설명하자면, 이른바 근대의 사상적 조류라는 ‘계몽주의’의 획일성에 대해 의문을 품으면서 등장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등장으로 현대사회는 다양한 입장과 가치를 가진 구성원들을 획일화된 법으로 재단裁斷하는 것보다 그 다양성을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방자치와 분권은 해당 조류에 부합하는 것으로, 획일화된 법체계가 아니라 지역의 특색을 존중하는 지역 자치의 실현으로서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조례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조례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행정권에 의해 정립되는 명령의 하위 체계에 귀속되는 한계를 지닌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서,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례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명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자치법규이며, 그에 따라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춰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를 시의성 있게 진행해야 하는 필요성을 갖는다.

최근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늘어나고 있다. 지

방자치와 분권은 개헌안에 어김없이 등장하며, 최근의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금까지의 지방자치가 유명무실한 이유를 지방의회의 전문인력 미비와 의원들을 보좌하는 사무기구의 행정부 예속으로 보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제공하고 지방의회 사무인력에 대한 지휘 및 감독권을 지방의회 의장에서 부여하도록 하였다. 더욱이 현재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재 지방의원 정원의 1/2규모로 제공되는 전문인력을 지방의원 정원만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 자치사무의 영역에서도 과학기술의 진흥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 등, 지방자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 활성화는 시대적 흐름이라 볼 수 있으며, 자치법규인 조례의 중요성은 더해질 것이다.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자치법규로써 조례가 실효성 있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비가 필수적이다.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 및 개정될 때 법률의 체계 및 자구 심사를 진행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을 현재 지방의회에서는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기에, 조례를 정비하는 기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의 조례는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기능해야 하며, 동시에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해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상위 법령의 입법 의도를 따르면서도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조례 정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치법규로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조례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기능하는가이다. 조례는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배치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개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조례는 지역주민의 이익을 집약하면서 동시에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 조례는 '자치법규'로서 주민의 이익을 집약해서 구현하고, 이를 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에 영향을 미치며, 주민이 이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이끈다. 따라서 주민의 이익에 부합하며, 동시에 불편함을 주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같은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방자치의 요체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조례는 지역의 특색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조례는 시의성과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사회규범은 사회구성원들에게 불편함을 가져다준다. 조례는 자치법규로서 주민들의 실생활에 가장 근접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시의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조례는 실효성도 갖춰야 한다.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조례는 자치법규로서 주민들이 조례를 보고 이해하기 쉽도록 기술되어야 한다. 헌법과 법령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은 스스로가 주권자인 민주주의 시대에

자신을 규율하는 법규범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자치법규로서의 조례 역시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은평구 조례 정비를 위한 실태조사의 연구 범위는 은평구의 조례 전체다. 2023년 10월 기준으로 은평구의 조례는 총 356건으로, 매우 넓은 범위이지만 기간과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서 전체 조례를 검토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분석과 비교 분석을 활용하였다. 조례에 대한 분석 및 상위 법령에 대한 분석은 문헌 분석으로 이루어졌으며, 은평구 조례에 대한 개정을 위한 사례 제시 및 은평구에 없는 조례를 확인하고 제언하기 위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의 비교 분석을 활용하였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은평구 조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3장에서는 현재 은평구에는 없지만 필요한 조례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마지막인 4장은 연구에 대한 요약과 함께 결론을 도출한다.

Ⅱ. 은평구 조례 분석

1. 의회사무국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1) 대상조항

가) 제7조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해야 한다.

2) 개정의견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제6장(복무)을 통해 법규 준수와 성실의 의무, 소속상사의 명령에 복종의 의무, 주민에게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 종교 중립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 의무, 정치운동 금지의 의무, 집단 행위 금지의 의무, 직무와 관련된 사례를 주고 받을 수 없는 청렴의 의무 등을 공무원의 복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두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다룬 것이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제7조에서는 “근검·절약”이라는 제목을 통해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하고,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공공성과는 무관한 것을 규정하는 것이며, 어떤 공익을 추구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근거 법령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3)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제47조 ~ 제59조)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

제47조(복무 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9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0조(직장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1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53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54조(외국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은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모집하게 하는 행위 또는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조합업무를 전임(專任)으로 하려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 지방의회의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해야 한다.	〈삭제〉

(2)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1) 대상조항

가)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2조

제2조(윤리강령의 준수)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의원이 준수하고 실천할 윤리 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 조례 제명

2) 개정의견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의원의 겸직 신고 방법 및 절차와 제46조제1항의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대한 사항을 모두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조(목적)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1항의 위임사항만을 규정한다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제1조와 제2조 그리고 조례 제명에서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 띄어쓰기 오류가 있다.

3)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 ⑦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나) 「지방자치법」 제46조

지방자치법

-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서 위임된 의원의 겸직 신고와 관련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46조제1항에서 위임된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의 준수)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의원이 준수하고 실천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조(윤리강령의 준수)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 ----- ----- ----- ----- ----- ----- -----.

(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1) 대상조항

가) 제2장 ~ 제5장 (제4조 ~ 제20조)

2) 개정의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제2장부터 제5장까지를 구성하는 제4조에서부터 제19조까지의 사항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그대로 옮겨 적고 있다. 심지어 제2장의 제4조부터 제4조의5까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삭제된 사항이다. 따라서 제2장부터 제5장까지는 삭제하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2조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3) 관련근거

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지방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다. 그 밖에 지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3. 삭제 <2016. 9. 27.>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영은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삭제 <2016. 9. 27.>

③ 이 영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영을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 삭제 <2022. 6. 2.>

제4조의2 삭제 <2022. 6. 2.>

제4조의3 삭제 <2022. 6. 2.>

제4조의4 삭제 <2022. 6. 2.>

제4조의5 삭제 <2022. 6. 2.>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지방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지방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2(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22. 6. 2.>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그 지방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 지방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의장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삭제 (2016. 9. 27.)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20. 4. 7.)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의장은 의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⑧ 의원은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18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영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의장과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1조(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 의장은 해당 지방의회에 소속된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 9. 27.>

제22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이 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영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인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3.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야 한다.

4.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을 허용하여야 한다.

5.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의장은 이 영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지방의회에서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의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행동강령 운영 등에 관한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장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4)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1) 대상조항

가)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제5조

제5조(여비 부담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허위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2) 개정의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는 세 단계로 개정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첫째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에서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할 경우,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현재 제5조에서는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제5조제1항과 제3항은 불필요한 반복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3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2항에서는 징수의 절차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데, 현재 조례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셋째로는 위의 사항들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한다면, 제1조(목적)에서 이 조례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다루고 있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3)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참고자료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에 따라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상관없이 나누는 행위

③ 시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告知)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2. 감사청렴담당관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1) 대상조항

가)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2조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 제4조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심의사항에 대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2) 개정의견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제1조(목적)에서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만을 다룬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조례 본문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에서 위임한 사항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1조(목적)에서도 이를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2조에서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적고 있지만,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해서 조례로 위임한 상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이기 때문에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제4조에서는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인사위원회로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문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2항이 아닌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이다. 또한 위 조례의 제4조제1호의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은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으로 개정해야 한다.

3)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한다.

④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

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3.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3의2.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4.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②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같은 항 제2호 또는 이 영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 -----.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심의사항에 대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에따라 ----- ----- ----- ----- ----- -----.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1. -----제4호까지의 사항 2. (생략)

(6)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 대상조항

가)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3조제4호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4.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결정

2) 개정의견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제1조에서 약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3조제4호에 명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현행 자치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읍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대상조항

가)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읍부즈만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정의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읍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1조에서는 근거법령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들고 있는데, 실제 해당 법률의 조례 위임사항은 제32조가 아닌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로 이 조례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에 이를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조례위임조문이 제38조를 제외하고는 없기에 폭넓게 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3) 관련근거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 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 ----- ----- -----.

3. 행정안전국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명위원회 조례

1) 대상조항

가)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나)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

2) 개정의견

제1조에서 근거 법령으로 제시하고 있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은 현행법령이 아니다. 따라서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로 근거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시·군·구 지명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시행령은 제88조가 아닌 제88조의2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개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1조(목적)에서는 약칭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에 이를 수정해야 하며, “서울특별시은평구지명위원회”는 잘못된 띄어쓰기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는 것과 지명위원회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대한 부분은 상위법령에 따라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민간위원의 해촉과 관련된 사항은 조례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3) 관련근거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

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지명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 ③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지명위원회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시·군·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
2.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
3.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4.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5.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4)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명위원회의 ----- ----- -----.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1) 대상조항

가)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정의견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에서 근거 법령으로 제시하고 있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은 2023년 6월, 제명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조례 역시 이를 반영하여 개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제1조에는 띄어쓰기 오류가 있다.

3) 관련근거

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장이 업무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하도록 하고, 행정업무 혁신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 영의 제명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며, 행정업무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정책연구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결과의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 ----- ----- 기여함을 목적으로 ----.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1) 대상조항

가)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정의견

해당 조례에서 근거 법령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현행법령이 아니기에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또한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그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법률의 조문이 조례 위임사항을 다루고 있지 않고 있기에 이를 삭제하거나 혹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1조에는 띄어쓰기 오류도 있다.

3)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법」 제12조

지방자치법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① 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

는 도의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 ----- -----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 ----- -----.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1) 대상조항

가)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정의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는 제1조(목적)에서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이 없는 자치조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정의,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한 보험가입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조례는 상위법령의 조례위임사항을 다루는 위임조례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관련근거

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로 하여금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안전교육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 중인 자원봉사자의 신체적 보호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보호
3.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호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임원·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④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 ②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 ③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②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④특별시·광역시·도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특별시·광역시·도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5.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6. 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7.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⑤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군·자치구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시·군·자치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⑥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1) 대상조항

가) 제2조제2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나) 제21조제2호

제2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제25조에 따른 자유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다) 제25조

제25조(자유발명의 승계)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2) 개정의견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는 「발명진흥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위임조례로서 법령용어 역시 상위법령인 「발명진흥법」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제2조제2호에 명시된 “자유발명”이라는 표현은 2006년, “개인발명”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상위법령의 용어 변경에 따라 조례 역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관련근거

가) 「발명진흥법」 제2조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생 략)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2. “개인발명”이란----- -----.
제2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 -----.
(생 략)	1. (생 략)
2. 제25조에 따른 자유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 개인발명의 ----- -----
제25조(자유발명의 승계)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제27조(개인발명의 승계) ① 개인발명에 ----- ----- ----- ----- -----.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 조례

1) 대상조항

가)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정의견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 조례」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면서 상위법령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법령은 현행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법령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3) 관련근거

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 ----- ----- -----.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대상조항

가)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5조제1항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2) 개정의견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에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조례에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조례에 위임한 내용만을 다루고 있기에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제5조제1항에는 오탈자가 있다.

3) 관련근거

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른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기관 외의 공공장소 등에 다양한 형태의 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은 각 행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민원실) ① 민원실의 장은 민원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민원실에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용지·필기구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담당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원실 시설·환경 등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

4. 교육문화국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 조례

1) 대상조항

가)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조례 제명

2) 개정의견

제1조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제1조는 띄어쓰기 오류가 있다. 그리고 해당 조례의 핵심은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과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제명을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3)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 ----- -----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 ----- -----.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1) 대상조항

가)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5조

제5조(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제4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 제7조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구청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위한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간의 연계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2) 개정의견

먼저 해당 조례는 형식적으로는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은 위임조례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례위임사항을 다루지 않는 자치조례에 부합하다. 따라서 해당 조례의 조문에서 거듭하여 상위 법령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개정되면서, 조례의 조문에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이 모두 틀어졌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5조의 경우에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조례의 개정 사항도 반영해야 한다.

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 ----- ----- ----- --.
제5조(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제4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 등) ①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 ----- -----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구청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 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위한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간의 연계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① ----- -----. 1. 법 제10조에 ----- 2. 법 제13조제2항에 ----- 3. 법 제14조에 ----- 4. 법 제15조에 ----- (생략)
---	--

(17)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 대상조항

가) 제6조

제6조(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나) 제22조

제22조(위원회의 구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별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개정의견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6조(조직 및 인력)에서는 도서관장과 그 임명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서관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해당 조례의 제22조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그런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도서관법」 제34조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3) 관련근거

가) 「도서관법」 제34조

도서관법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위원회의 구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별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4조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8)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진흥 조례

1) 대상조항

가)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따라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육 진흥방안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정의견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진흥 조례」의 제1조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를 근거 법령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당위적 표현을 기술하고 있을 뿐, 조례 위임 사항은 없다. 실제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제5조의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조례의 제1조의 목적에서는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3) 관련근거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4)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따라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육 진흥방안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육 진흥방안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9)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1) 대상조항

가) 제39조

제39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2) 개정의견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제39조에서는 양성평등기금의 설치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지만, 기금의 설치에 대한 사항이 상위법령의 조례위임 사항에 따른 것임을 안내하지 않고 있기에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3) 관련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

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4)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9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39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20)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1) 대상조항

가) 제3조

제3조(사육허가)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연구, 진료, 인공수정,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육하거나 계류되어 있는 가축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축산물도매시장, 공판장,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 및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에 계류 중인 가축

2) 개정의견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제3조제2호의 「축산물가공처리법」은 현행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법령인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3조에서는 띄어쓰기 오류가 있다(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3)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사육허가)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축산물도매시장, 공판장,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 및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에 계류 중인 가축	제3조(사육허가) -----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 ----- -----. 1. (생략) 2.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 ----- ----- -----

5. 주민복지국

(21) 서울특별시 은평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1) 대상조항

가)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특성에 맞게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3조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법 제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본인포기,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중지된 경우 제외

2) 개정의견

「서울특별시 은평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위기상황에 대한 정의)을 규정하는 위임조례다. 제1조에서는 조례로 위임한 상위법령을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로 기술하고 있지만, 실제로 조례위임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가 아닌 제2조제8호이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제3조에서도 마찬가지다. 또한 제1조에서는 약칭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제3조제2호에는 띄어쓰기 오류가 있다.

3) 관련근거

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특성에 맞게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및 ----- ----- ----- ----- ----- -----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법 제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 법 제2조제8항 및 ----- ----- ----- ----- -----.
1. (생략)	2. (생략)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본인포기,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중지된 경우 제외	2. ----- ----- ----- ----- 단, 본인포기,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
3. ~ 12. (생략)	3. ~ 12. (생략)

(2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1) 대상조항

가)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7조제2항

제7조(실무협의체에 두는 실무분과의 구성)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공무원인 경우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등 업무팀장 및 담당주무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다) 제14조제5항

제14조(회의 등)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라) 제16조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개정의견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는 오타자 및 띄어쓰기 오류가 있다. 제1조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개정해야 하며, 제7조제2항, 제14조제5항, 제16조에는 띄어쓰기 오류가 있다.

(23)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1) 대상조항

가) 처우개선위원회 관련 사항

2) 개정의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서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 등에 관해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제처에서는 이를 조례에서 반드시 규정해야 하는 필수조례로 인지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은평구에서는 처우개선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관련근거

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24)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

1) 대상조항

가) 제6조제6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회의록, 안전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사유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2) 개정의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 제6조제6항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현행 자치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

3)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회의록, 안전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사유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⑥ ----- -----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6. 재정경제국

(25)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1) 대상조항

가) 제2조제1호 및 제4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원도급자”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2) 개정의견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서는 “건설업자”를 법령용어으로써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위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건설업자”라는 용어가 아닌 “건설사업자”로 용어를 순화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2019. 4. 30. 개정). 따라서 조례에서도 상위법령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3) 관련근거

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유(2019. 4. 30.)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이유
[2019. 4.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는 등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

나)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0. 6. 9.>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사업자”란 ----- ----- ----- -----.
4. “원도급자”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4. ----- ----- 건설사업자를 ----- ----- 건설사업자를 -----.

(26)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

1) 대상조항

-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

2) 개정의견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는 제1조(목적)에서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징수법」을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에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105조(체납처분 유예)다. 그런데 은평구는 그 중에서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법제처에서 제시하는 필수조례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법률의 위임사항이면서도 동시에 은평구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이기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3) 관련근거

가) 「지방세징수법」 제7조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체납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지방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나)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정리보류액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 또는 공보 게재,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지방세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채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납액에 대하여 채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채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승인·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채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채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4)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는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① 법 제11조에 따른 채납자의 채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금액은 지방세 채납액(시세를 포함한다) 1천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채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채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

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 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7)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1) 대상조항

가)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영업시간제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은평구”라 한다) 지역실정에 적절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4조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은평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개정의견

조례에는 주민의 책무가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로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은 사항이 아니라면, 조례는 주민에게 책무를 부여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 사실 조례 정비 연구를 진행하면서 해당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상당히 많은 수의 조례가 주민의 책무를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조례에서의 구민의 책무가 선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에 조례 정비 의견을 개진하지 않는 편이지만, 아무리 보수적으로 접근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조례의 제4조에서 주민의 책무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 이유는 첫째로는 해당 규정은 법률의 위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고, 둘째로는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도 주민(국민)의 책무에 대한 사항이 없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에 있어서 구민의 책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조례는 제1조에서 약칭을 하고 있다.

3) 관련근거

가)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53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법률에 조례로 위임하는 규정이 있거나 법률에서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에 조례로 재위임하는 규정이 있어야 조례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음. 주민에게 추상적인 노력의무나 책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해당 내용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4)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 제4항,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영업시간제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은평구”라 한다) 지역실정에 적절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실정에 ----- -----.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	〈삭 제〉

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은평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

(28)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1) 대상조항

가)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정의견

이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이며, 이 조항만으로는 근거법령으로 기능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60조를 근거법령으로 제시하고자 한다면, “제2항”을 삭제해야할 것으로 보인다(사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60조는 조례위임조문은 아니며, 이 조례에서는 시행령의 제60조 조문을 그대로 옮겨적고 있다)

3)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 지급 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4)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제60조에 따라 ----- ----- -----.

(29) 서울특별시 은평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 대상조항

가)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정의견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를 근거법령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해당 조문은 제130조로 개정되었기에 이를 반영해야할 필요가 있다. 사실 「지방자치법」 제130조는 조례위임조문이 아니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의 근거법령으로 기술할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는 이 조례를 자치조례의 형식으로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는 현행법령이 아니기에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3)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30조 ----- ----- ----- ----- -----.

7. 교통환경국

(30)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1) 대상조항

가)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정의견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위임조례다. 법제처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조례위임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규정해야 하는 필수조례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은 조례위임사항이 없다. 기존의 법률에 제6조제2항이 신설되며, 기존 제6조제2항에 위치하던 조례위임규정은 제6조제3항으로 자리를 옮겼다.

3) 관련근거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 나. 임차 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 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건설·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 주체와 임차 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일반 수요에 적합한 경제 규모일 것
 2.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4. 소유 또는 임차계약 등에 따라 배관망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허가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 기준의 범위에서 지역 특성에 적합하도록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거나 공급권역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 ----- ----- -----.

(31)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 기본 조례

1) 대상조항

가)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와 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종합적인 환경시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정의견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 기본 조례」 제1조는 띄어쓰기 오류가 있다. 또한 제1조에서는 약칭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환경정책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3) 관련근거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1의2.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가축분뇨의 처리·자원화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6.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 등 환경시험·검사 및 환경기술 분야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설정, 재질·구조의 개선, 재활용비율 등에 관한 사항
 - 8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에 관한 사항
 - 8의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연순환·지구환경 등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은 환경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사람이 공동으로 하고, 분과위원장은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연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 ⑤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4)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와 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종합적인 환경시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환경보전의 기본이 되는 사항과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3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1) 대상조항

가)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정의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에 의거하지 않는 자치조례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을 다루고 있기에, 이를 명시하여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해당 조례는 수수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주민의 침익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있으므로, 상위법률의 위임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3) 관련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 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

회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⑩ 환경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9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15조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는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자의 처리실적을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에 포함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

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가.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한다)

나.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4)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 ----- ----- -----.

5) 참고자료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3)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1) 대상조항

가)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2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다) 제10조제3항제2호

제10조(재정지원 등)

③ 환경교육 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시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공
2. 그 밖에 환경교육 시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정의견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에서는 「환경교육진흥법」을 근거법령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현행법령이 아니다. 따라서 「환경교육진흥법」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으로 개정해야 한다. 또한 제10조제3항제2호에는 띄어쓰기 오류가 있다.

3) 관련근거

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법률 체계 전반을 정비하고, 환경교육 우수 학교의 지정 등을 통해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 사회환경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회환경교육을 촉진하는 등 다양한 방안과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제명).

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 ----- -----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

(34)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1) 대상조항

가)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자연공원법」 등 환경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훼손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나) 제2조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한 환경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제3조

제3항(신고) ①누구든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를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할 수 있다.

②신고할 때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환경오염·훼손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 전화, 정보통신망, 모사전송, 방문, 우편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라) 제5조

제5조(처리결과통보) 구청장은 신고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하고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개정의견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의 제1조에서 근거법령으로 제시하고는 법령 중 「수질환경보전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현행법령이 아니다.

더욱 근본적으로 해당 조례의 내용을 담고자 한다면, 현재 제시된 법령이 아닌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가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제2조는 띄어쓰기 오류가 있으며, 내용상으로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서 “환경법위반행위”에 대한 정의를 가져오는 것이 더 나은 방안으로 보인다. 제3조는 제3항으로 기술되어 있기에 개정이 필요하고, 제1항 및 제2항에는 띄어쓰기 오류가 있다. 제5조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해야 한다.

3) 관련근거

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제8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단속·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환경법위반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 다만, 시멘트·석탄·토사(土砂)·사료·곡물 및 고철의 분체(粉體) 상태 물질을 운송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는 행위

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포상금) 환경법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환경부장관, 지방환경

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포상금의 지급) ① 삭제

② 법 제15조에 따라 범죄의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 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사건의 개요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에 따라 범죄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그 신고내용이 환경법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포상금의 금액·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6조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환경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하나의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포상금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포상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유사한 사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300만원의 범위에서 조례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자연공원법」 등 환경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훼손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 ----- ----- ----- -----.

5)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환경법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할구역에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환경오염행위”라 한다)가 발각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신고)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방문·우편·전화·팩스·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

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2.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3. 신고인이 가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4.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7.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②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대상, 포상기준 및 포상금액은 별표와 같다.
- ③ 포상금액은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처리한 경우 그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8. 도시안전건설국

(35)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1) 대상조항

가)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다) 제4조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개정의견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는 현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근거 법령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현행 법령이 아니다. 해당 조문은 현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자리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부분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만, 위임 대상은 광역자치단체이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는 위임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며, 위임조례처럼 근거 법령을 명시할 것인지, 자치조례로 만들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근거 법령을 수정하는 방안을 안내하고자 한다. 제2조제1호와 제4조에는 띄어쓰기 오류가 있다.

3)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주택용소방시설)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4)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 ----- ----- -----.

(36)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 조례

1) 대상조항

가)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5조

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개정의견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 조례」의 제1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를 근거법령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룬 조문이며, 실질적으로 조례에 위임한 조문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이다. 더욱이 해당 조례에서는 주민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법령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제1조와 제5조에서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도록 개정안을 제시한다.

3) 관련근거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은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기구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나)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어린이놀이기구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흡연·음주 행위
2.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5.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6.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해당 어린이놀이기구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4)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 ----- ----- -----.
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행위의 제한)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제1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 ----- ----- -----.

(3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대상조항

가)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정의견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근거법령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진재해대책법」은 현행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3) 관련근거

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도 또는 시·군·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4)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 ----- ----- -----.

(38)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수 관리 조례

1) 대상조항

가)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정의견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은 「지하수법 시행규칙」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3) 관련근거

가) 「지하수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지하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종전에 「지하수법 시행규칙」과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으로 이원화되었던 것을 「지하수법 시행규칙」으로 통합하는 한편,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업무, 물 공급 취약지역 지원 대상 지역, 지하수의 국가측정망 및 보조측정망의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4)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 ----- -----.

9. 보건소

(39)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대상조항

가)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음주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에서 구민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사회질서와 안녕에 위협이 되는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다) 제3조

제3조(음주청정지역 지정) ①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규정한 도시공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개정 2018.7.5.)

② 구청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 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2) 개정의견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침익적 행위

로써,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만으로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에 관련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는 조문이 때문에 해당 조례를 위임조례로 규정하여 관련 내용의 실효성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다음은 법령 용어에 대한 부분으로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을 위임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는 “음주청적지역”이라는 표현이 아닌 “금주구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에 상위법령의 용어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3)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음주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에서 구민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주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에서 구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사회 질서와 안녕에 위협이 되는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음주청정지역 지정)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1. ~ 2. (생 략)

② 구청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 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2조(정의) -----
-----.

1. “금주구역”이란 -----

-----.

제3조(금주구역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2. (생 략)

② ----- 금주구역을 -----
-----.

③ ----- 금주구역의 -----
-----.

(40)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1) 대상조항

가)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정의견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제1조(목적)를 근거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지역보건법」에서 과태료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은 제34조제2항이 아닌 제34조제3항이다.

3) 관련근거

가) 「지역보건법」 제34조

지역보건법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4)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 ----- -----.

(41)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1) 대상조항

가) 제1조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5조제1항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 제8조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당해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개정의견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제1조에서 근거법령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조례위임조문이 다수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해당 조례에 대한 규정을 위임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를 명확하게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

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법령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을 들고 있는데,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으로 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8조에서는 금연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흡연구역”이 아닌 “흡연실”로 기술하고 있기에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3)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 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 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 는 당해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는 당해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 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1.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 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 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 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 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 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 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 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 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 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에 따라 ----- ----- ----- -----. 제8조(흡연실의 설치 등) ① ----- ----- ----- ----- 흡연실을 -----. ② ----- 흡연실을 ----- ----- ----- -----. 1. 흡연실은 ----- ----- ----- ----- ----- 흡연실 로 -----. 2. 흡연실에는 ----- ----- ----- ----- -----. ③ ----- 흡연실 ----- ----- ----- -----.
--	--

Ⅲ. 은평구에 없는 조례 및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

은평구에 없는 조례를 필수조례와 위임조례라는 두 가지 구분을 통해 제시하고 한다. 필수조례는 위임조례 중에서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필수조례로 분류하고 있는 조례이며, 위임조례는 필수조례로는 분류하고 있지 않은 위임조례를 지칭한다. 또한 여기에서는 상위법령의 위임과 관계없이 은평구에 없는 조례 중 몇 개의 조례를 추천하여 추천이유와 함께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안내하고자 한다.

1. 필수조례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조례 위임 법령

가) 「청소년 보호법」 제31조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 범죄 또는 탈선의 예방 등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이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 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 및 학교 등 해당 지역의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을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통행을 막을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은 해당 구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2) 의견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서는 “청소년 범죄 또는 탈선의 예방 등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이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 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은평구에서는 해당 조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관련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법제처에서는 해당 위임사항을 필수사항으로 구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장소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은평구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 - 성남시

성남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 규정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 기준대상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되어있는 구역,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내의 청소년의 통행은 24시간 금지한다. 다만, 부모,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시장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지정절차) ① 시장이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표시) ①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출입구 및 주요 구역에는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운영)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운영 시간중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실시한다.

1. 청소년의 선도·보호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의 통행금지·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의 운영
3. 그 밖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의 정화활동 등
4. 시장은 해당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학교·시민 단체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③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정절차) ①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정해제) ①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구청장은 해당구역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③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협조체제유지)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학교·시민단체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위임조례

(2)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대비에 관한 조례

1) 조례 위임 법령

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시행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5.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이행의 확인 및 지원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의견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구밀도가 높아서 화학물질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대도시에서는 관련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규정되는 조례가 매우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서울 대다수 지역에서는 위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3)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 -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광역시 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주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시행계획은 「울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사고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

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울산광역시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에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제16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화학물질관리업무 담당국장,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동부경찰서장

나. 동부소방서장

다.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 담당기관의 장

라.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 장 또는 담당공무원

마.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바.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대표 또는 산업계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아.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 대표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자. 주민대표 또는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차. 그 밖에 구청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2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1. 회의개최 일시·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①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대피장소의 지정요건 및 절차,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방법
 6. 화학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과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정한 사항
- ③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구청장이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9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시의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
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사고대응계획 중 주민 정보전달 방법 및 절차, 유관기관과의 협의 체계가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9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구청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20조(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비상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비상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21조(비용 지원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2.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추천조례

(3) 민원 버스 운영 조례

1) 추천이유

은평구청 및 은평구의회에 차를 가지고 방문하면, 주차공간이 없어서 기다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특정한 상황에 나타난다면, 구청 및 구의회를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어떠한 사건의 영향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 수시로 일어난다면, 그것은 은평구청에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서 찾아온 구민들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문제는 은평구청이 위치한 곳이 대중교통이 발달한 곳도 아니고, 그렇다고 현재 구청사를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원 버스 운영 조례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만약 은평구에서 민원 버스를 운영한다면, 버스 내에서 자치구의 조례 및 정책을 홍보하고 안내할 수 있는 미디어와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하는 버스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같이 고민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

제천시 민원버스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청을 이용하는 시민의 민원편의 제공을 위하여 “민원버스”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버스”란 민원인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시내일원에서 시청까지 노선을 정하여 일정구간을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말한다.
2. “이용자”란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고자 민원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을 말한다.

제3조(운영) ① “민원버스”는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직접 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민원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이용요금) “민원버스” 이용자에게 대한 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5조(운행범위) ① 차량운행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고, 운행시간은 09:00부터 18:00시까지 운행한다.

② 운행노선은 시내중심도로 1개 노선으로 운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1) 추천이유

대한민국에서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적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뿐 아니라 안전교육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은 아동기에 배워놓음으로써 앞으로 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며, 안전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공적인 지원이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존수영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하였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현재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사항은 조례를 넘어 국회에서 법률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며, 법률로써 규정된다고 할지라도 현재로서는 대도시들은 생존수영교육을 진행할 공간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몇몇 자치단체들은 선점적으로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황이며, 은평구 역시 먼저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2)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등포구 초등학생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생”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시설”이란 구가 설치·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

다.

제4조(지원대상) 생존수영교육 지원대상자는 초등학생으로 한다.

제5조(시설확충) 구청장은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운영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지원) 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협력)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및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학교장과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5) 공공 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1) 추천이유

건강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병원 및 약국은 항상 열려 있지 않다. 위급한 상황이라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응급실을 방문해야겠지만, 위급한 정도가 과하지 않아 약물을 통해 극복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약국에서 약을 구매 후 복용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다. 더욱이 아동의 경우, 건강에 대한 문제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 심야약국을 운영하도록 지원한다면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 심야약국은 대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공공 심야약국은 서울을 포함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었으며, 최근 개정된 「약사법」에는 관련 조문이 신설되었다. 현재의 「약사법」은 공공 심야약국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현실적인 고려로 인해 이후 시행령 차원에서라도 조례로 위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에 대한 대응 및 구민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은평구는 공공 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약사법」 제21조의3

약사법

제2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이하 “공공심야약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공심야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3. 제8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69조의4제1호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⑦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⑧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시행일: 2024. 4. 19.] 제21조의3

3)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 야간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 야간약국”(이하 “야간약국”이라 한다)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으로서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야간시간대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야간약국의 지정·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야간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야간약국 지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야간약국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근무 약사의 의무) 야간약국의 근무 약사는 약사윤리기준, 약사윤리강령을 지키고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야간약국의 운영시간 등을 지켜야 한다.

제5조(야간약국의 관리) ① 구청장은 야간약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야간약국의 운영실태를 분기별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야간약국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야간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에서 제4조를 위반하거나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원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6) 측정장비 대여 조례

1) 추천이유

안전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더욱이 현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안전이란 과거처럼 국방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질병적 관점, 위생적 관점, 경제적 관점, 환경적 관점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안전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적으로 개인의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맡아왔기에 변화되는 안전에 대한 수요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 측정장비 대여 조례는 변화하는 안전에 대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조례로 보이기에 은평구에 이를 추천하고자 한다.

2)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

제1조(목적)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락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측정장비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환경측정장비”란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들에 대하여 안전도나 오염도 등을 측정하는 장비들을 말한다.
2. “대여센터”란 노원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생활환경측정장비 대여를 위하여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들이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측정장비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생활환경측정장비 구매를 위해서 동별 수요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4조(대여센터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생활환경측정장비를 주민들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대여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및 지역 상황에 따라 비치되는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으며 센터에서 대여

가 불가할 경우에는 구에서 대행할 수 있다.

1.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
 2.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환경측정장비
- ② 구청장은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주민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동의시에는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생활환경측정장비의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
 2. 생활환경측정장비에 대한 파손 등에 대한 책임사항
 3. 생활환경측정장비의 측정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 및 행정청의 책임 여부
 4. 본인확인 및 대여 이력확인을 위한 성명·생년월일 등 기본 개인정보
- ③ 구청장은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기능·외관 등에 하자가 없음을 알려주어야 하며, 반납하는 경우에도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④ 대여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대여의 절차 등) ①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센터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순서에 따라 대여한다.

- ② 대여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 ③ 대여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환경측정장비의 가액 등에 따라 1회 5천원 이하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 ④ 그 밖에 대여센터의 운영 및 대여의 절차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대여 받은 자의 의무 등) ①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 받은 자는 생활환경측정장비의 사용 및 관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대여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대여 받은 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여 받은 자에 대하여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정한 대여기간을 위반한 경우
2. 생활환경측정장비에 중대한 손상을 입힌 경우
3. 허위사실이나 기망의 방법으로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한 경우

제8조(대여결과의 정리 및 반영) ①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

하는 경우 비치된 장부에 기록을 하고, 1년 단위로 지역별 현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대여센터 별로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거나 이전하여 주민들이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7)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1) 추천이유

자치법규를 포함한 법은 구성원들이 함께 지켜야 하는 것으로, 법과 규율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과거 기득권의 이익을 보호하는 도구에서 점점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역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자치법규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확장 나가는 좋은 방안으로 보인다.

2)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구가 관리·운영(구의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5. “이동편의시설”이란 장애인이 공연장 등의 최적관람석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수에 해당하는 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등에 대한 투·융자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최적관람석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이 이동가능한 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와 해당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보조) 구청장은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구가 관리·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에 대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구비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최적관람석의 활용) 구청장은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유도하는 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8)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1) 추천이유

배달업종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인 곳임에도 불구하고, 배달업종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은 미비한 상황이다. 더욱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은 배달종사자 안전과 건강에 대한 문제를 질병적 관점에서도 살펴봐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제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증진에 대한 문제는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문제와 직결되기에,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추천하고자 한다.

2)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달사업체”는 배달을 통하여 식품류를 판매하거나 배달을 대행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배달종사자”란 배달사업체에서 배달을 목적으로 고용한 노동자와 배달을 주된 업무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배달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배달종사자 및 구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나. 배달사업체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배달종사자에게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배달종사자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한 근무환경의 유지, 배달종사자 및 배달사업체의 안전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배달사업체의 책무) ① 배달사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 보호 장구의 지급
 2. 「도로교통법」 준수, 안전운행 및 사고대처요령 등 안전교육 실시
 3. 배달에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등 운송수단의 일상점검 실시
- ② 배달사업체는 배달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휴게실 조성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달사업체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배달종사자의 책무) ① 배달종사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 보호 장구의 철저한 착용 및 관리
 2. 교통법규 준수
 3. 배달 물품에 대한 훼손 금지
- ② 배달종사자는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배달종사자의 근무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배달종사자, 배달사업체, 구민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토론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배달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단 구성) ① 구청장은 배달종사자의 근무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2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 ② 자문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2. 구 소속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2명
 3. 배달사업체 대표 3명
 4. 배달종사자 3명
 5.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배달사업체에게 교통법규·식품위생·산업안전보건·인권보호·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배달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법규·식품위생·산업안전보건·인권보호·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배달사업체 및 배달종사자를 우선 교육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9조(지원) ① 구청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배달사업체와 배달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관리용품 지원
2. 배달종사자 휴식공간 환경개선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9) 디지털 미래 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

1) 추천이유

지금까지 산업혁명은 산업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4차 산업혁명은 네 번째 산업 혁명이라는 뜻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산업 전반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변화는 다채로울 것이며, 변화의 범위 역시 상당할 수 있기에 인재 양성에 있어서도 이에 부합하는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2)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3.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4.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융합 기반 기술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및 교육환경에 적용함으로써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5. “디지털 미래인재”란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내 학생과 학교 등

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을 디지털 미래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2. 4차 산업혁명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3. 학교교육과정 및 현장학습 등 활동 지원
 4. 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및 현장학습 등 활동 지원
 5.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과 관련된 아이디어 발굴 및 박람회, 기술 경진대회 등의 개최
 6. 그 밖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활성화와 참여 촉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장을 수여하거나 기념품·상품권 등과 같은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계획(이하 ‘양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양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법인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자문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책방향 설정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사업의 평가 및 점검,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또는 교사
4. 4차 산업혁명 및 관련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의 개인사정,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0) 부모 교육 지원 조례

1) 추천이유

가장 근본적인 교육이자 중요한 교육은 부모교육이다. 사회가 더욱 미분화되고 파편화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더욱 중요한 사회화 주체로 남게 되었으며, 현대 사회에서 부모교육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3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교육 지원 조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은평구에도 의미 있는 조례로 판단된다.

2)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모 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모교육을 지원하고 자녀의 바른 성장을 도모하여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가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에 필요한 지식, 정보·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가치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③ 부모교육을 희망하는 구민이 쉽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5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적합한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생활습관을 기르고 자립심, 자제력,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부모교육 내용)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방법에 관한 교육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교육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8조(부모교육 자문위원회 운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에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모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한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1. 도봉구의원
2. 부모교육 업무 관련 공무원

3. 관련 기관·단체의 부모교육 관계자

4.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부모교육 관련 전문가

③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도봉구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9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협의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부모교육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한 사항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이하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교류협력 등)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 지원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1)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조례

1) 추천이유

시각장애인에게도 알 권리가 있다. 그들 역시 시민이며,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조례는 최소한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한 행사(관광, 문화, 예술, 체육 등)에서 시각장애인이 현장을 이해하고 동참하도록 기여하는 조례로, 장애인들과 실질적으로 생활을 함께 하는 지역사회에서 그들을 위해 따뜻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추천하고자 한다.

2)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

수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볼 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시각기능의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수원시의회 및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현장해설을 통

한 시각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자신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현장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표창) 시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수원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Ⅳ. 결론 및 요약

조례 정비 연구의 일반적인 틀은 조례가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과 맞춤법과 띄어쓰기 오류, 그리고 입법기술을 수정하는 것이다. 즉, 법률 차원에서의 체계 및 자구심사에 해당하는 사항이 조례 정비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조례의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주민들에게 유용한 조례, 현재 은평구에 마련되어 있지만, 정책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조례, 현재 은평구에 없으며,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조례를 찾는 등으로 연구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물론 연구 기간과 자원에 비해 과업 범위가 매우 방대하여 어려움이 많았지만, 법체계와 은평구에 필요한 조례를 찾는 것을 위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먼저 은평구 조례 정비 연구를 통해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한 은평구의 조례로 의회사무국 4건, 감사청렴담당관 3건, 행정안전국 7건, 교육문화국 6건, 주민복지국 4건, 재정경제국 5건, 교통환경국 5건, 도시안전건설국 4건, 보건소 3건을 확인하였다. 상임위원회별로 정리하면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운영위원회(의회사무국) 4건, 행정복지위원회(감사청렴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안전국, 교육문화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23건, 재무건설위원회(재정경제국, 교통환경국, 도시안전건설국) 14건에 대하여 조례 정비안을 제시하였다. 은평구에 없는 조례로는 위임조례 2건(필수조례 1건 포함)과 추천조례 11건을 도출하였다.